

더 가까이, 충주

제2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2024. 7. 16. ~ 7. 18.

- 조례안 및 기타안건 -

검 토 보 고 서



충 주 시 의 회
전 문 위 원 실

차 례

1	충주시 금가 달맞이꽃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6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7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8	충주시와 중국 우호교류 도시 다칭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22

① 충주시 금가 달숲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7월 4일 정용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76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충주시민을 위한 힐링 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광수요를 대비하여 조성된 금가 달숲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위치, 정의(안 제1조 ~ 제3조)
- 입장료, 이용시간(안 제4조 ~ 제5조)
-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안 제6조 ~ 제7조)
- 이용자의 손해배상(안 제8조)
- 관리·위탁, 수탁자의 의무(안 제9조 ~ 제10조)
- 준용(안 제11조)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2024. 6. 20. ~ 7. 1. (의견 1건, 반영)
- 규제심사: 완료

- 부패영향평가: 완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금가 달숫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 된 것으로,
-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금가 달숫정원의 위치, 정의, 입장료 및 이용시간, 위탁사항 등을 규정함.
- 금가 달숫정원은 환경오염배출시설인 금가 숲가마공장을 철거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곳으로 '23. 12. 준공되었으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어 민간위탁 수탁자를 다회의 모집공고를 거쳐 선정함.
- 이처럼, 사업이 준공되고 수탁자가 선정되어 운영을 앞두고 있는 금가 달숫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입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안 제4조의 입장료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 안 제6조~8조의 입장제한, 행위 제한, 손해 배상 등은 달숫정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한 사항들이며, 안 제9조~제10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이사항이 없음.
- 검토결과,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설 시설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만들어 금가 달숫정원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조례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안 제5조제1항의 이용시간은 ‘안 제10조제5항에 따른 운영자의 사업계획’ 을 따르게 되어 있으나 안 제10조제5항에는 운영자가 아닌 ‘수탁자’ 의 사업계획으로 되고 안 제3조제3호에 ‘운영자’ 에 대한 정의가 있어 조례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운영자의 사업계획에 의해 정한다’ 를 ‘수탁자의 사업계획서를 따른다’ 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리며,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이용시간) ① 달솥정원의 이 용시간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u>운 영자의 사업계획에 의해 정한다.</u>	제5조(이용시간) ① ----- ----- <u>수탁자의 사업계획서를 따른다</u>

- 안 제5조제3항의 충주시장에 대한 약칭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 치법규에서 약칭을 사용하려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안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장’ 에 약칭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이용시간) ① (생 략) ② 달솥정원은 상시 개원하되, 다 음 각 호의 경우 휴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u>시장이</u>	제5조(이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u>충주시장</u>

<p>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p>(이하 “시장”이라 한다)-----</p> <p>③ ----- <u>시</u> <u>장</u>----- ----- ----- -----.</p>
--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7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7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시립미술관 작품수집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작품 제안을 통한 전문성 있는 소장품 수집을 위해 외부 제안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외부 제안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4항)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2024. 6. 4. ~ 6. 24.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완료
- 부패영향평가: 완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외부 제안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안 된 것으로,
- 현행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에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을 위한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의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외부 제안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이러한 이유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시 작품수입 제안 자문수당 4,800천원을 삭감된 이력이 있음.
-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예산 편성 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작품수집 관련 외부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시립미술관 건립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③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7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7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인감 증명 요구 사무 정비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 요구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첨부 조항 삭제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2024. 5. 16. ~ 6. 5.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완료
- 부패영향평가: 완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요구 되는 인감 증명서를 삭제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이 방재 활동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충주시에서는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현 조례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장제·유족 보상금 지급 시 과거 행정청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였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게 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고자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23. 4. ~ 9.)를 실시하여 법령, 조례 등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 사항을 삭제토록 요구함.
-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인감 요구사무 정비 정책에 발맞추고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됨.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재해보상금 지급)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 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 ② ~ ③ (생략)

4]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7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7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내용 삭제 및 수수료 면제대상을 조정하고, 조문 용어와 별표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내용 삭제 및 관련 사항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삽입(안 제4조 및 부칙)
- 수수료 반환요건에, 과오납, 발급기관의 귀책사유조항 신설(안 제12조)

- 수수료 면제대상 조정(안 제13조)
- 수수료금액 신설·삭제·변경(안 별표1)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2024. 5. 22. ~ 6. 11.(의견접수 1건, 반영)
- 규제심사: 완료
- 부패영향평가: 완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충주시의 사무에 대한 수수료와 면제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 금액을 개정된 별표 1로 규정하였으며 정보공개 수수료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2항에 따라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0조를 개정하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명시하여 수수료 규정에 대한 근거 부재를 방지하였으며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하게 함.

- 안 제4조에서 규정한 별표 1의 수수료 개정 사항은 대장문서, 건물도면,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용허가, 수상레저 관련 증명서임.
-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대장문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을 반영하여 500원으로 개정됨.
- 건물도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100원으로 개정됨.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 제2조에 따라 10,000원으로 개정됨.
- 하천점용 수수료 등은 「하천법」 제89조(허가수수료) 폐지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됨.
- 동력 수상레저 등록 등의 수수료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수상레저사업 등록 등의 수수료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각각 개정됨.
- 안 제12조는 신청인의 의사여부에 의해서만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재 규정을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등으로 잘못 발급 되었을 경우 신청이 없어도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편의적인 측면을 완화함.
- 안 제13조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을 추가 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 현 조례에 있었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로 이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높였으며, 각종 수수료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2. 12. 13.>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115조제1항 관련)

해당 업무	단위	수수료	해당 법조문
12.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신청			법 제106조제1항제13호
가. 방문 발급	1필지당	500원	
1) 토지대장	1필지당	500원	

2) 임야대장	가로21cm, 세로30	700원	
3) 지적도	cm	700원	
4) 임야도	가로21cm, 세로30	500원	
5) 경계점좌표등록부	cm		
나. 인터넷 발급	1필지당	무료	
1) 토지대장		무료	
2) 임야대장	1필지당	무료	
3) 지적도	1필지당	무료	
4) 임야도	가로21cm, 세로30	무료	
5) 경계점좌표등록부	cm		
	가로21cm, 세로30		
	cm		
	1필지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수수료) ①제11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다만, 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으로 하고,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기준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3. 1. 10.>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

납부 대상자	금액
1. 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1,500원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300원
3.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으려는 자	13,500원
4.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가)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나)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1,500원(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3,500원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가)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자 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다)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검사대행자가 정한 수수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수수료(제40조제1항 관련)

납부 대상자	금액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가) 필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나)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800원 64,800원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4,400원(교재비를 포함한다)
3. 법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 가) 면허증의 신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나)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	5,000원 4,000원
4. 법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 가) 수상레저사업의 신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나)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다) 수상레저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 라) 수상레저사업의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자	20,000원 10,000원 없음 20,000원

5]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7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7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및 동절기 등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시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용료 환불 근거를 명시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운영시간 변경 및 휴무일 조항 삭제
- 사용료 환불 근거 명시화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2024. 5. 17. ~ 6. 7.(의견없음)
- 규제심사: 완료
- 부패영향평가: 완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탄금호 피크닉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관광지,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 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탄금호 피크닉공원 운영 및 관리는 충주시의 할 것임.

- 2023년 탄금호 피크닉공원 시범운영 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감시간(21시) 연장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다수 존재하여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다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다 할 것으로 판단 됨.

▣ 탄금호 피크닉공원 현황

시설명	규모	운영	주요시설 내역
탄금호 피크닉공원	부지: 11,000㎡ 총사업비: 7.5억원 사이트: 25개소 개장일: 23. 11. 2.	공공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사이트25, 실내외세척장, 화장실, 분리수거장, 애견놀이터 • 충주문화관광재단 위탁 • 2024년 운영실적(2. 9. ~ 4. 16.) - 3,434명 / 6백만원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6.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7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7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청소년 놀이기구 설치에 따른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 놀이기구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시설
- 기존 라바랜드 놀이기구를 어린이 놀이기구와 청소년 놀이기구로 구분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2024. 5. 17. ~ 6. 7.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완료
- 부패영향평가: 완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라바랜드에 청소년 놀이기구를 신설함에 따라 청소년 놀이기구

이용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 됨.

- 충주 라바랜드 청소년 놀이기구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약29억 원을 들여 회전그네, 자이로스윙, 타워드롭, 하늘자전거 4종의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4. 10. 준공예정임.
- 이용료 징수는 침익적인 행위로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하며,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는 관광지,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 이용료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이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의 입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충주라바랜드 현황

시설명	규모	운영	주요시설 내역
충주 라바랜드	부지: 3,300㎡ 총사업비: 45억원 (국비13억, 시비32억) 개장일: 16. 4. 29.	민간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2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키즈카페): 영유아 / 10종 - 실외(옥상 및 야외): 전연령층 / 11종 • 추가(청소년 놀이기구 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드롭, 자이로스윙, 회전그네, 하늘자전거 • (주)어드벤처월드원 위탁(21~25) • 순수익금 배분(충주시6, 수탁자4)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7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7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을 충주시에 기부한 자에 대한 우선예약 및 예약 당일 취소권에 대한 환불 근거를 마련하고 바비큐장 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캠핑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고향사랑기부금을 충주시에 기부한 자에 대한 우선예약 근거 마련
- 예약 당일 취소 건에 대한 전부 반환 근거 마련
- 바비큐장 이용 관련 규정 정비(주차 2대 → 주차 1대 등)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2024. 5. 17. ~ 6. 7.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완료
- 부패영향평가: 완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목계솔밭 캠핑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안 된 것으로,
- 우선 예약 대상자에 고향사랑 기부자를 추가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의 증대에 기여, 당일 예약 건에 대한 전부 반환 근거 마련으로 당일 예약 취소자의 민원 방지, 바비큐장의 주차대수를 2대에서 1대로 줄임으로써 원활한 바비큐장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충주라바랜드 현황

시설명	규모	운영	주요시설 내역
목계솔밭 캠핑장	부지: 64,079㎡ 총사업비: 76.5억원 개장일: 23. 4. 1.	공공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핑 사이트 168 - 화장실(샤워장) 5, 세척장 3, 매점 1 농산물판매장 1, 덤프1 - 관리동, 주차장 43, 쓰레기집하장 • 시설관리공단 위탁 • 2024년 운영실적(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3명 / 97백만원

8. 충주시와충국우호교류도시다칭시간지매결연체결에 관한 동안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7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8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충주시는 세계 여러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국외 도시와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음.
- 특히, 중국, 일본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다칭시는 우호교류 도시 협정 체결 후 20여 년간 오랜 교류를 이어왔고,
- 금번 다칭시의 제안으로 양 도시 간 신뢰를 돈독히 하고 교류 분야 확대를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함.

3.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 10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국제 자매결연은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여 동의를 받고자 함.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다칭시의 자매도시 체결 제안(24. 3.)에 따라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된 것임.
- 충주시의 국제교류도시는 자매결연도시 2곳(일본유가와라정, 대만 대중시), 우호교류도시 4곳(일본 무사시노시, 중국 다칭시, 미국 애틀랜틱시티, 중국 초작시) 총 6곳임.
- 금번 자매결연 체결 대상 도시인 다칭시는 인구 272만명의 석

유화학산업이 발전된 곳으로 충주시와 2001. 10. 10.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교류를 포함하여 다수의 민간교류가 있었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20년 이상 우호교류 도시로서 다양한 교류를 해온 다칭시와의 자매결연은 충분한 신뢰가 있다고 사료 되며, 각 나라의 지방 자치에 대한 이해 등 행정 교류와 문화, 민간 교류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 됨.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중국 흑룡강성 다칭시 현황

위 치	흑룡강성(黑龍江省) 다칭시(大慶市)		
홈페이지	zfwf.daqing.gov.cn		
면 적	22,161km ²		
인 구	약 272만명		
행정구역	5개 구, 3개 현, 1개 자치현 관할		
협정일자	2001년 10월 10일 (시청 3층 회의실, 김선웅 - 위홍주 부시장)		
시장 및 시위서기	 <p>※ 시장 겸 시위부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암송 (李岩松) - 68년생, 한족 - 2021. 9. 취임 	 <p>※ 시위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세봉 (李世峰) - 76년생, 한족 - 2021. 6. 취임 	
도시소개	<p>국무원 비준으로 확정된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중서부 중요한중심도시, 중국 중요한 석유생산과 석유화학공업기지임. 국가문명도시, 국가위생도시, 국가환경보호모범도시, 국가정원도시이며, 중국 우수한 생태관광도시로 '녹색 기름의 도시, 천연 백호의 도시, 북국 온천의 고향(绿色油化之都 `天然百湖之城` 北国温泉之乡)'으로 불림. 중국 최대 석유석화기지로 중국 제1의 유전인 다칭유전(大庆油田)이 있는 동시에 석유·석화를 기간산업으로 하는 유명 공업도시로 세계에너지도시파트너십 19개 회원도시 중 하나임. 다칭유전 기름 함유면적 6,000km² 이상, 석유 지질 매장량 67억 톤으로 밝혀짐. 2023년 3월 26일 다칭유전은 누적 원유 생산량 25억 톤 돌파, 누적 원유 생산량 중국 1위 달성</p>		
주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산업(1959년에 유전 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가장 큰 유전이자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은 석유생산 - 석유산업이 전체 GDP의 60%차지 - GDP : 지역 총생산액 2,988.6억 위안 		
교류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이룽장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칭북도의 소개로 '99. 4. 21. 다칭시 외사판공실 주임이 충주를 방문하면서 교류 시작 • 충주JC와 다칭시 청년연합회간 우호교류협정도 체결('08. 12) 		
교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까지 의원, 공무원 연수단, 투자유치단 방문 등 충주에서 다칭시를 일방적 방문 사례 많았음 • 2006년 이후 교류 미비, 2009년부터 충주JC와 다칭시 청년연합회간 교류 활발(상호 축제 방문 등) • 2013년 충주 예총과 다칭시 문화체육관광 그룹과 문화교류 협약서 체결 • 2013년 이후 지속적 서면 교류는 있었으나 대표단 파견 등대면 교류는 없었음 		
한국 지자체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결연 도시 : 없음 • 우호교류 도시 : 충칭북도 충주시(2001. 10.) 		